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 차량 및 기타 장비(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기운영관리) ① 중기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분산보관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 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중기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중 기 사 용

제4조(중기사용) 중기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복구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중기투입계획수립) 사업소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중기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중기사용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중 중기부문공사는 사업소 보유 중기(이하 "관중기"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중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기사용신청) ①사업소 보유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1에 의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중기사용결정) ①사업소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자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기사용기간의 갱신) ①사업소장은 중기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갱신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기간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중기 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로 갈음한다.

제10조(중기공사의 도급시공) ①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군의 차선도색공사 등을 도급시공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중기로 공사를 도급 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중기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중기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기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중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 받아 공사한도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증기의 조종 등) ①증기는 사업소 소속 증기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증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증기반납시 증기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증기의 투입 및 회수) ①증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증기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증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 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증기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증기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 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 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증기반납비용 예치) ①증기를 민간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증기사용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증기반납일자에 반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기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기회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증기반납예치금은 증기회수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4조(사용증기의 망실 또는 훼손) ①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증인증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증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증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
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 3 장 중 기 사 용 료

제15조(사용료 구분 등) ① 중기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 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 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중기를 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중기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중기사용료는 별표2의 중기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중기사용료표에 게기되지 않은 중기의 사용료는 사업소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사업소장은 별표3에 의한 중기기본사용료가 지역 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중기가동증진을 위하여 중기사용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18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중기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중기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기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기동시간을 초과사용. 다만, 중기 운반용 중기는 제외

2. 중기운반용 중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을 기준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중기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른 수송기간과 조립 설치 또는 분해를 요하는 중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

② 기준기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기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거 징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①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8조의 사용료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 부담 주유하고, 조종사 조수의 숙식비는 증기투입시 선지급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

②민간인에게 증기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증기사용료 전액을 증기투입전에 선징수하여야 한다.

③관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가 관증기를 사용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행 기관의 장이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21조(잠수입) 제10조 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증기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잠수입 조치한다.

제22조(증기대체비충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잠수입된 증기사용료는 전액 증기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보수증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1994. 1. 1.부터 폐지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중기 임대차 계약서

별지목록 중기임대차에 관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중기를 사용한다.

1. 중기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일간
	지	년	월	일	

2. 공사명 및 위치

3. 사용증기명세 : 별첨 명세표 참조

제2조(사용료) ①중기사용료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금 원정으로 한다.

②을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전1항의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인수) ①중기의 수송비용(인수 및 반납)과 수송도중 비용은 그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중기를 인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수 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중기의 교체) 사용한 중기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불능케 되었거나 갑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공장수리) ①을은 사용기간중 중기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정비이행) 갑은 중기의 예방정비로서 손질, 주유 및 정기적인 부속교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중 재해응급복구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을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계약목적 이외에 중기를 사용한 때
4. 사용료를 미납한 때

5. 증기의 일일정비 불이행시

6. 가동시간 초과운행시

제8조(사고책임) 증기의 운반수송도중 또는 올의 과실로 대여기간중 발생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후수습 등은 올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자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도로보수증기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0조(잡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을 상호 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계약담당관

주 소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인)

을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갑 주 소

성 명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별표2>

중기사용료산출기준표

1. 중기기본사용료 : 별표 제3호

2. 중기운전경비

 가. 중기조종사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함.

 나. 중기조종사 숙식비 : 충청북도 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정액

 다. 중기유류대 :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라. 중기현장정비비

 1) 정비품명 : 삼날류, 타이어, 넝마, 운활유, 기타 소모성 중기부품

 2) 소모기준 : 정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별표3>

중 기 기 본 사 용 료

(단위 : 원)

중 기 명	형식 또는 규격	시간당 사용료
볼 도 우 저	BD - 11 D - 60 D - 80 D - 7E HD - 16 D - 8H HD - 21	5,274 5,473 6,919 7,503 16,514 9,195 21,841
로 우 더	JH - 60 545 B 605 B 645 B LK 600	4,060 7,530 8,237 9,650 11,889
모우터 그레이더	3.6m FG85A(3.65m) MG400(3.61m)	9,010 11,990 10,988
글 삭 기	45CL 또는 DH04-2 DH 05W DH 07-3 90CL 또는 DH09	5,148 8,276 9,214 10,387
덤프트럭	6 톤 8 톤 CWR 3651 10.5 톤 15 톤	3,198 4,200 5,264 6,330 8,780

종 기 명	형식 또는 규격	시간당 사용료
로 울 러	마카담 13톤 이하 한엠 및 진동 10톤 이하 한엠진동 2톤(KW100AD) 한엠진동 6-8톤 한엠진동 8톤 (DTV-86) 한엠진동 8-20톤 타이어 CT-12(7-14톤)	4,234 4,869 4,350 5,334 8,536 3,505 9,344
아스팔트믹싱플랜트	30톤 미만 80톤 미만 120톤 미만	9,134 35,967 39,987
아스팔트살포기	6,000ℓ STAS 200K(200ℓ)	11,440 407
아스팔트휘니서	3-7m	6,734
콜드밀링머시인	1000c4WD, 1000M/M	47,177
쇄 석 기	40톤/시간당(강원산업'86년식) 40톤/시간당 70톤/시간당	30,566 32,438 51,906
선 별 기	120톤/시간당(강원산업'86년식)	10,254
공기압축기	80톤 트럭 적재식 전동식 17㎥/분	2,579 3,750

증 기 명	형 식 또는 규 격	시간당 사용료
트럭트랙타트레일러	20톤	4,298
	트럭트랙타, 트레일러 각각 사용시	2,149
도로보수차	일본. HAMA	17,900
차선도색기	자주식 10cm 이상	13,730
	수동식 10cm 이상	737
	수동식 제거기 10cm 이상	613
아스팔트파쇄기	DA-20X (0.25톤)	658
아스팔트혼합기	200ℓ (세종기계)	2,436
심층다짐기	TV - 808	407
표층진동다짐기	SVC-1600	577
살수차	HD80M	5,896
중형화물차	K3000	1,765
기 타	톤수, 구입가격, 작업용량이 유사한 동일기종의 증기	동일기종준용

<별지제1호서식>

중 기 사 용 신 청 서

1. 신청내역

증기명	규격	수량	사용희망기간	일 수	사용자	용도 및 작업량	비고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일간			

2. 사업계획 개요

3. 공사비 개요(설계서 기준)

- 충공사비
- 중기비

충청북도도로보수증기운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코자 하오니 투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무인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증 기 사 용 승 인 통 지 서

등록번호	증기명	규격	사용기간			인수		반납		비고
			장소	일자	일자	일자	장소	일자	장소	

귀 기관(기하)이 신청한 증기를 위와 같이 사용승인 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제반 소정절차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인)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증기사용기간갱신신청서

○ 수신 :

○ 신청내역 :

등록번호	증기명	규격	당초 사용기간	일수	갱신 사용기간	일수	비고

년 월 일자 사용승인하신 증기사용 기간을 갱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별지 제4호서식>

증 기 사 용 기 간 갱 신 승 인 통 지 서

○ 수 신 :

○ 승인내역 :

등록번호	증 기 명	규격	당 초		갱 신		비 고
			사용기간	일 수	사용기간	일 수	

년 월 일자 귀하의 신청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인)

<별지제5호서식>

증 기 도 금 공 사 신 청 서

1. 공사내역

2. 증기공사 개요

첨부 : 공사 설계도서

충청북도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도급 공사를 신청합니다.

卷之三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무인